



## 회사 소속 시스템엔지니어 정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사건

28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정16년(네) 제424호
판결 일자	2004. 4. 22.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무사시 정보 시스템		
피고 (피항소인)	B(피고인 이름 없음)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7호, 4조, 5조 3항		
영업 비밀	항소인회사 소속 시스템 엔지니어에 관한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손해배상, 영업비밀의 부정 공개		

### 02 사건 개요

항소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기획·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항소인은 2000년 3월 30일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작업 기간 중에도, 작업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약정으로 항소인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 등에 종사했다.

피항소인은 항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 D의 의뢰에 응해 항소인회사 본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시스템엔지니어에 관한 정보(이하 ‘본건 데이터’)를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고 3회에 걸쳐 그 내용을 PC화면에 일시적으로 표시하여 D에게 공개 하였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소인의 회사에 피해가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이 계약상 특약 위반을 하였으며,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항소인이 손해 발생의 책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항소인 회사의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입수한 D에게 이직을 권유받아서, 이직을 하였다가 돌아온 경우나, 항소인 회사를 돌연 퇴사한 경우는 항소인에게 손해의 발생이다.

항소인은 청구원인으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D가 항소인의 회사에서 시스템엔지니어를 빼낸 사실은 전혀 없고, D가 본 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업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항소인에게 손해를 끼친바 없다.

### 04 판결 요지

본건 데이터는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항소인의 업무에 유용한 영업상의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인정되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하지만 피항소인이 본건 공개행위 시(D의 요청에 3회에 걸쳐 PC화면에 일시적으로 표시), 부정의 경업 그 외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 내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까지 인정할 만한 정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영업비밀의 부정공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부정사용 혹은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건에서 항소인에게 손해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부정경쟁방지법 5조 3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05 Key Point

부정경쟁방지법 5조 3항은 동법 2조 1항 7호 소정의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침해에 관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전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수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 규정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본적 틀을 넘을 수밖에 없다.